

## 【돈이 없는 사람부터, 고액 의료비를 받지 마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민자, 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코로나 19의 만연이, 이민자·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이민자·난민들을 받지 않는 병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받은 병원 중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이민자·난민들에게 고액 치료비 청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민자·난민들의 의료에 대해서는, 이민자·난민 커뮤니티, 종교조직, 일부의 의료기관, 그리고 민간 NGO 등의 「공조(共助)」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하여, 우리들은, 일본정부에, 이하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합니다.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피 임시방면자(被仮放免者)가, 그 임시방면 기간 중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내어 주십시오. 재류자격을 내어 주지 못하더라도, 출입국관리청(入管庁)이 의료비를 부담하여 주십시오.
2. 건강보험자격을 얻을 수 없는 이민자, 난민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귀국을 못하는 이들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미 지불보전사업(未払補填事業,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보전/보충하는 사업)을 정비·확충하여 주십시오.
3.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없는 이민자·난민의 의료비를 고액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4.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가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혹은 생활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서방세계와 같은 공적의료통역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적, 재류자격, 건강보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서명은 여기에서.

<https://www.change.org/EmergencyMedicalAid>



일본어



English

## 외국인에게도 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 16 조에는, 일본인도 외국인도,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제안할 권리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나 제안을 한다 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나 정치가, 공무원, 경찰관, 재판관은, 헌법에 정해진 권리를 중히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서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시국 이민자·난민의 의료를 요구하는 연학회

(사무국) NPO 법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이주련 移住連)

[migrants.jp](http://migrants.jp)